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33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자 : 황운하 · 정춘생 · 차규근
이해민 · 강경숙 · 김준형
신장식 · 서왕진 · 김선민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형사조정과 관련하여, 검사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사건을 회송받아 그 결과를 수사 및 사건 처리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경찰청 · 중대범죄수사청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관련 법률의 수사주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형사조정 절차가 종료된 사건과 관련 서면도 해당 사건을 회부한 사법경찰관에게 보내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 과

정에서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5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검사는피의자”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법경찰관은 형사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u>검사는</u> <u>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u>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u>사법경찰관은 피의자</u>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① · ② (생략)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u>검사</u> 에게 보내야 한다.	③ ----- ----- ----- ----- <u>사법경찰관</u> ----- -----.
④ <u>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u>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④ <u>사법경찰관은 형사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는 공조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u> -----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